

[참고]

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 (2013. 12. 23. 공포·시행)
제29조(안전심의) ① ~ ③ (생략) ④ 다음 각 호의 안전은 위원회 심사나 보고를 생략하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여 처리한다. 1. ~ 14. (생략) 15. <u>본회의 투표지 공개</u> 16. <u>위원회 개회 요구</u> 17. ~ 20. (생략)	제29조(안전심의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. 1. ~ 14. (현행과 같음) 15. <u>회의록 기재사항과 정정에 관한 이의신청</u> 16. <u>본회의가 요구하는 위원회 개회</u> 17. ~ 20. (생략)
제32조(의안의 이송) 의회에서 의결된 의안은 의장이 이를 시장 또는 교육감에게 이송한다. <u><단서 신설></u>	제32조(의안의 이송)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이송하는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
제38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과 교육감의 시정질문에 대한 일괄답변, 시정연설, 외빈 및 외국명사의 연설은 예외로 한다. ② 질의·보충발언·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. ③ <삭제 2006-10-23> <u><신설></u>	제38조(발언시간의 제한) ① 의원 및 공무원의 발언(토론을 포함한다) 시간 ----- <u>시정질문에 대한 답변, -----</u>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의장은 발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시각이나 언어장애 또는 절단장애 등을 가진 의원이 발언을 신청하는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한 발언시간의 1.5배 이내에서 발언을 허가할 수 있다.</u>

현행	개정 (2013. 12. 23. 공포·시행)
④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. 제38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~ ③ (생략) ④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의회운영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제48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동일한 의제에 대하여 <u>수개</u>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<u>각호</u>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. 1. <u>최후의</u>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. 2. <u>의원의</u> 수정안은 위원회의 <u>수정안</u> 보다 먼저 표결한다. 3. <u>의원의</u> 수정안이 <u>수개</u>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. 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. <단서 신설>	④ ----- ----- ----- 범위 ----- -----. 제38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 ④ 의장은 5분 자유발언신청서 제출 순으로 발언을 허가하되, 신청의원이 6명을 초과하는 경우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발언의원 수와 순서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. 이 경우 상임위원회별로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. 제48조(수정안의 표결순서) ① ----- 여러 개 ----- ----- 각 호 ----- -----. 1. <u>최후로</u> ----- -----. 2. ----- <u>수정안보다</u> -----. 3. ----- 여러 개 있는 경우에는 ----- -----. ② ----- -----. 다만,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심사 보고한 수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이를 원안으로 간주하여 당초의 원안을 표결하지 아니한다.

현행	개정 (2013. 12. 23. 공포시행)
제50조(회의록의 작성) ① ~ ② (생략) <u><신설></u> 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<u>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</u>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.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. 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. <u><신설></u> <u><신설></u> 제59조(위원의 발언) 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<u>회수</u> 및 시간 등에 <u>제한없이</u> 발언할 수 있다. 다만,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② 위원은 위원회에서 질의를 <u>1문1답</u> 방식으로 할 수 있다.	제50조(회의록의 작성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회의록 기재사항 중 각종 보고서와 참고문서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.</u> 제52조(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) ① ----- ----- <u>임시회의록이 홈페이지 전자회의록에 게재된 날부터 5일 이내에</u>----- ----- -----. ② (현행과 같음) ③ <u>속기방법에 의하여 작성한 회의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,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.</u> 제53조의2(위임규정) <u>회의록의 작성과 발간, 배부와 보존,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.</u> 제59조(위원의 발언) ① ----- ----- <u>횟수</u> ----- ----- <u>제한 없이</u> ----- ----- <u>의결한 경우에는</u>-----. ② ----- <u>일문일답이나 일괄질의</u> -----.

현행	개정 (2013. 12. 23. 공포·시행)
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(생략) ② <u>시정에 관한 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되, 이중 어느 하나의 방식을 선택하여야 하며, 질문순서는 일문일답 방식이 일괄질문·일괄답변 방식에 우선한다.</u> ③ (생략) ④ <u>일괄질문·일괄답변과 서면질문·구두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질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.</u> ⑤ (생략) ⑥ (생략) ⑦ <u>의장은 효율적인 질문을 위하여 의원이 일괄질문·서면답변이나 서면질문·구두답변을 병행하여 신청하는 경우에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허가할 수 있다.</u>	제73조의2(시정질문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시정질문은 일문일답, 일괄질문·답변, 일괄질문 서면답변, 서면질문 구두답변, 서면질문·답변 방식으로 하되, 두 가지 이상의 방식을 병행하여 할 수 있으며, 질문순서는 일문일답, 일괄질문, 서면질문 순으로 한다. 다만, 일문일답과 일괄질문 방식은 병행할 수 없다.</u> ③ (현행과 같음) ④ <u>일괄질문·답변과 서면질문 구두답변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⑤ (현행과 같음) ⑥ (현행과 같음) ⑦ <삭제>

현행	개정 (2013. 12. 23. 공포시행)
<신설> <신설>	<u>제88조의2(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)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확보액 범위에서 의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(비공개 회의를 제외한다)하게 할 수 있다.</u> <u>② 중계방송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정치운동 자료 또는 중계방송 중 상업용 광고의 삽입 등 정치적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.</u> <u>제88조의3(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)</u> <u>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(공청회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을 포함한다)를 그 대상으로 한다.</u> <u>②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(시정연설을 포함한다), 예결위원회의 예산안 종합심사, 공청회, 중요 안건의 심의 등은 우선적으로 중계방송을 하여야 한다.</u> <u>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,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할 수 없다. 다만,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u>